

## 18. 동일한 평정기간 중의 경력 및 실적의 중복 평정 금지

- 가. 연구학교 근무경력 중복(주5일제 선도학교 및 교과별 교수학습도움센터 중심학교, 도·농교류체험, 교과특성화학교, 교과특기자육성교, 과학교육선도학교 근무경력 포함)
- 나.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근무경력과 도서벽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 근무경력 중복
- 다. 보직교사, 학급담임교사, 순회교사, 파견교사 및 겸임교사, 국제올림피아드, 발명교실(2009.03.01. ~2022.02.28.), 영재교육 담당교사, 공동실습소 운영교사 경력, 전국소년체전 또는 전국체육대회 시·도대표,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도 대표 직접지도경력, 2013.03.01.이후의 청소년단체 활동지도 교사 경력(2013.03.01.~ 2022.02.28., 2013.02.28.이전 경력은 종전 규정에 따라 타 경력과 중복 평정 인정) 중 어느 두 가지의 중복 (경교인2013-7.(2013.01.25.))
- 라. 도서·벽지·접적지역 학교, 접경지역 학교, 농·어촌지역 학교, 공단지역 학교, 특성화고등학교,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중 어느 두 가지의 중복
- 마. 2009.02.28.이전의 발명교실 지도교사 실적과 도서·벽지·접적지역 학교, 접경지역 학교, 농·어촌지역 학교, 공단지역 학교 등 지역 가산점 부여학교 근무기간의 중복
- 바. 예절체험학습장 운영 유공교원 가산점(도지정 연구학교 유공교원 가산점)은 2006학년도 실적부터 인정하나 2007학년도부터는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과 중복 불인정  
(단, 2006학년도 실적은 청소년단체가산점과 중복 허용, 초등교육과-6315, 2007.03.15.)
- 사. 동일 기간 동안 2개 이상 연수과정을 이수하여도 전부 인정(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-5960(2013.11.14.)호.)
  - 2014.01.01.부터 동일 기간 중에 2개 이상 원격연수과정 수강 가능
  - 동일 기간 동안에 서로 다른 집합연수를 2개 이상 이수하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(사례: 대학원 연수 파견 기간 중 교감 자격연수 이수 등)
  - 2013.12.31.까지 이수한 연수의 중복연수 평정기준
    - 학기 중 기간 중복: (원칙) 원격연수와 집합(원격)연수의 중복 시 연수기간이 짧은 연수를 기준으로 연수기간의 1/4 이하인 경우 2강좌 모두 인정(기간 중복이 1/4 초과인 경우 2강좌 중 1강좌만 인정)
    - 방학 중 기간 중복 : 원격연수와 집합(원격)연수의 경우 2강좌 중복 허용
    - 정책연수 중복 허용

(예) 2013 학생인권 상담 및 사이버 연수, 창의지성교육의 이해 원격 직무연수(사이버), 사례로 배우는 학교폭력 대처방안 원격직무연수